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32

발의연월일: 2020. 9. 2.

발 의 자:김경협·서영석·전혜숙

박성준 · 황운하 · 김민석

김정호 · 김경만 · 설 훈

양정숙・윤미향・윤재갑

김승원 · 안규백 · 김상희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는 읍·면·동(행정동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동)마다 1개소씩 설치·운영하되, 읍·면·동의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천시는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2016년 정부의 방침과 권고에 따라 기존의 3개 구(區)를 폐지하였고, 2019. 7. 1. 기존 3 6개의 행정동을 10개의 행정동으로 통합·개편하였음.

이러한 행정개편에 따라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부천시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의 수가 기존 36개에서 10개로 대폭줄었고,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원거리 사전투표소로의 사전투표를위한 이동을 기피하여 이례적으로 사전투표율이 현저하게 낮아졌으며,

선거사무소 사무원과 후보자 현수막 게시 등도 대폭 감소하여 유권자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실제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결과, 부천시 신중동 1개소의 사전투표인수는 24,344명으로 매우 많아 극심하게 혼잡하였던 반면 부천시의 사전투표율은 19.71%로 250개 집계구 중 최하위권인 249위를 기록했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사전투표와 비교하여 전국적으로 119%, 경기도 권역은 114%가 각각 증가하였음에도 부천시는 81% 증가에 전국 최하위 증가율에 그쳤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읍·면·동을 통합·개편하여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종전대로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권자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사전투표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부응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단서).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 단서 중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을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읍·면·동을 통합·개편하여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한 제1 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읍·면·동을 통합·개 편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읍·면·동의 수의 감소에 따른 적용례) 2019년 7월 1일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읍·면·동을 통합·개편하여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정은 종전의 읍·면·동의 수를 기준으로하다.

1. 제62조제2항에 따라 읍·면·동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선거사무

원의 수

- 2. 제67조제1항에 따라 읍·면·동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현수막의 수
- 3. 제118조제5호에 따라 읍·면·동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현수막의 수
- 4. 제121조제1항에 따라 읍·면·동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선거비용 제한액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	
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	
·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	
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 · 운영하여	
야 한다. 다만, 읍•면•동 관	
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	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거나 지
<u>이 있는 경우에는</u> 해당 지역에	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읍・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	면・동을 통합・개편하여 읍・
영할 수 있다.	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